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업체 행정처분(영업정지) 변경 공고

경기도 공고 제2022-5597호(2022.5.26.)에 따른 행정처분(영업정지)의 변경 사항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26일 경기도지사

상 호	소재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변경내용		근거법령 및
(대표자)			당 초	변 경	변경 사유
	경기도 시흥시				건설산업기본법제84조
㈜창조종합건설	은계중앙로 362,	건축공사업	영업정지	영업정지	(대표자의 교육이수에
(박재근)	702호(대야동	(03-0524)	('22.6.25.~'22.10.24.)	('22.6.25.~'22.10.9.)	따른 영업정지 기간
	수림프라자)				감경)